

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55
----------	-----

제출년월일 : 1999. 7. 12.

제출자 : 고성군수

1. 개정사유

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공설시장의 효율적관리운영에 이바지코자함.

2. 개정골자

- 시장사용권 증도해지시 잔여기간 사용료를 반환(안 제8조)
- 위탁징수계약기간을 1년어내에서 2년어내(안 제12조제3항)
- 계약보증금을 20/100에서 10/100으로, 연대보증인수를 3인이상에서 2인이상(안 제13조)
- 위탁징수자 요건을 시장소재지 읍면 거주자에서 군관내 거주자(안 제14조제1호)
-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징수를 면한자의 과태료를 면한액의 5배어내에서 20/100가산(안 제18조제2항)

3. 관련근거

규제완화및자치법규정비

4. 본 문

덧붙임과 같음

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사용료반환금액) 시장사용권이 취소·정지 또는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중 “시장번영회와”를 삭제하고 동조 제3항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100분의20”을 “100분의10”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3인”을 “2인”으로 한다.

제14조제1호중 “시장 소재지 읍면”을 “고성군내”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5배이내의”를 “100분의20이 추가된”으로 한다.

[별표 2] 사용료징수의 기준란중 “영오공설시장사용료 년사용료 : 10m²당 112,700원”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8조(사용료 반환액)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권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시장 사용권이 취소, 정지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8조(사용료 반환액) 시장 사용권이 취소, 정지 또는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p>
<p>제12조(위탁징수) ①(생략) ② 제1항의 위탁징수자는 시장변영회와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로서 결정하되 군수가 정하는 시장 사용료 기준액의 범위 안에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최고 낙찰자로 한다. ③ 위탁징수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계약기간을 경신할수 있다.</p>	<p>제12조(위탁징수) ①(현행과 같음) ② ----- <삭제> ----- ----- ----- ----- ----- ----- ----- ③ ----- ----- 2년 ----- ----- -----</p>
<p>제13조(계약보증금 및 보증인) ① 위탁징수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금을 납입하지 못할 때에는 위탁징수자는 3인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p>	<p>제13조(계약보증금 및 보증인) ① ----- 100분의10 ----- ----- ----- ② ----- ----- 2인이상 ----- -----</p>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4조(위탁징수자 결격사유)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자는 위탁징수자가 될 수 없다.</p> <p>1. <u>시장소재지 읍면의 주민이 아닌자</u></p> <p>2~7(생략)</p> <p>제18조(과태료) ①(생략)</p> <p>②사기.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자는 그 징수를 면한액의 <u>5배이내의 과태료</u>에 처한다.</p> <p>[별표 2]</p> <p>사용료 징수 기준란중</p> <p>° <u>영오시장 사용료</u></p> <p><u>-년사용료 : 10㎡당 112,700원</u></p>	<p>제14조(위탁징수자 결격사유)-----</p> <p>-----</p> <p>-----</p> <p>1. <u>고성군내의</u> -----</p> <p>-----</p> <p>2~7(현행과 같음)</p> <p>제18조(과태료) ①(현행과 같음)</p> <p>②-----</p> <p>-----</p> <p><u>-100분의20이추가된</u> -----</p> <p>-----</p> <p>[별표 2]</p> <p>-----</p> <p>----- <삭제></p> <p>----- <삭제></p>